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5년 7월 10일

나. 회부일자 : 1995년 7월 12일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서 부지사를 2인이상 두는 경우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자격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별정직으로 임용토록 되어있는 정무부지사의 임용근거가 되는 자격을 충청북도조례로 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의 자격기준
 - .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 .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
 - .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
 - .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5. 검토의견

충청북도 부지사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검토한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들수 있는 정무직부지사의 자격기준에 대해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직 부지사의 자격기준에 있어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와 충청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의 내용에 반하는 자를 제외하고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와 주민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이상
재직하였거나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지닌자로하여 그 자격기준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정무직 부지사의 임용과 관련한 법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칙 부

충청북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안